



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I .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사업예산제도와 기존 품목예산제도와의 차이

Ⅰ 질 의 Ⅰ

- 사업예산제도는 기존의 품목예산제도와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Ⅰ 회 신 Ⅰ

- 품목예산제도는 사업 본래의 성과달성보다는 예산집행의 통제에 치중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예산 운용이 어려운 예산편성 제도임
- 사업예산제도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등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담당조직의 자율과 책임 하에서 개별사업의 성과관리를 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성과와 결과를 중시함
(투입·재원중심 → 산출중심, 통제중심 → 성과중심, 품목중심 → 사업중심)

2.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 비교

Ⅰ 질 의 Ⅰ

□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주요 차이점

Ⅰ 회 신 Ⅰ

○ 구조적 측면

구 분	품목예산제도	사업예산제도	비 고
기 본 체 계	•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 정책 및 사업, 중장기 및 단년도예산과 연계
기 능 분 류	• 5장 16관	• 13분야 51부문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출 예산을 일치 • UN COFOG 기준
사 업 체 계	• 세항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이 목별로 구분되어 산재	• 정책-단위-세부사업 단위로 묶되 자치단체 자율 설정	• 정책사업이 자율과 책임의 기본단위로서 기능
예 산 품 목	• 8그룹 38목 109세목 • 목·세목별 예산편성	• 8그룹 38편성목 127통계목 • 편성목별 예산편성	• 통계 및 회계처리 등을 위해 통계목 사용
예 산 원 가	• 인건비·기본사업비 및 주요사업비가 사업단위로 연계되지 않고 구분 관리	• 주요사업비는 직접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간접비로 단위사업 수준에서 연계관리	• 간접비의 범위 및 예산원가 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산서체계	•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 편제	• 사업중심으로 편제	• 정책방향성 제시 등 포함

○ 운영적 측면

구 분	개 선 방 향
재 정 계 획	• Top-Down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편성한도액관리 도입
예 산 관 리	•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성과예산서 작성 • 예산서 체계를 개편하고, 사업부서가 자율권 보장을 위한 변경사용절차 도입
예 산 집 행	• 복식부회계처리를 위하여 예산통계목과 회계계정과목을 연계
결 산 관 리	•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사업별 원가보고서 작성 • 예/실대비를 위한 예산결산과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결산
모 니 터 링	• 사업별 Life-cycle을 관리하는 사업관리카드를 통해 재정운영현황 모니터링

3. 정책사업 개념

|| 질 의 ||

- 정책사업이란

|| 회 신 ||

- 정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미션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계층의 사업단위로서 기능(분야, 부문)으로부터 직접 도출됨
- 하나의 정책사업은 단일기능을 가지며, 성과측정의 기본단위가 됨. 또한, 정책사업은 품목별 예산 구조상의 “항, 세항”보다 구체적이면서 정책적으로 구분되는 사업단위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과” 단위에서 수행되도록 설정함

4. 정책사업의 목표 설정

|| 질 의 ||

- 정책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 회 신 ||

- 각 자치단체별 장기종합계획, 중기재정계획, 연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미션(임무, 존재 이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조직 전체, 5년 정도 장기목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실국단위, 3년 정도 중기목표)를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에서 정책사업의 목표를 설정함

5. 단위사업의 개념

|| 질 의 ||

- 단위사업이란 무엇인지

회신

-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성과목표 형태로 구체화 하고 이에 따라 정책사업을 보다 세분한 사업단위로서 정책사업과 내용적으로 일관성이 요구됨

6. 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의 예산편성

질의

- 특별회계, 기금의 사업은 어떻게 편성하는지

회신

- 기타특별회계의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경우, 자치단체 조직의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정책사업 아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설정하면 됨
- 이 경우 규모나 중요성 면에서 기타특별회계만으로 정책사업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함

II.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 투자심사 총사업비의 개념

질의

- 투자심사의 시기는 기본계획수립 이후 실시설계용역전에 하여야 하고, 또한 투자심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기본설계용역비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지침 중 세출예산 목구분과 설정에 있는 401-01(기본조사설계비) “타당성조사, 교통환경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등은 투자심사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투자심사시 총사업비에는 용역비,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투자심사전에 예산편성 집행된 기본조사설계비도 총사업비에 포함하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조사설계비(401-01)에 편성이 가능한 예산은 투자심사 전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 투자심사 전에 편성·집행된 기본조사설계비도 총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심사전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2. 축제관련 행사 투융자심사 대상여부

질의

-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을 새롭게 2억3천을 세우려고 하는데, 축제행사 동안에 기존에 다른 부서에 서있는 행사 가령 노인의 날 기념식 등을 함께하려고 하는데 그럼 행사동안 투자하는 총 예산이 5억을 초과하는데 투융자 심사대상 인지

회신

- 종전에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행사를 지역축제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할 경우
- 총사업비 개념 기준으로 5억원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3. 순수의존재원사업 투융자심사 대상 여부

질의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보조사업은 자치구 자체심사 대상인데 자체재원(구비)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국비나 시비보조금 사업인 경우에도 자치구 자체 심사 대상이 되는지

【 회 신 】

○ 대상사업비 총액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시비가 수반되거나 전액 시비 보조사업은 지방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총액개념 기준으로 심사주체를 판단하여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함

3. 투·융자심사 시기

【 질 의 】

- 질의 1) 2006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2006. 3. 14)에 따르면 당초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 실시설계 확정 또는 의존재원 추가확보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투융자 심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사업시행 이전 이라 함은
 - 넓은 의미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의 경우도 사업시행으로 보는지, 아니면 공사의 경우 착공(착수)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 2) 당초 심사대상사업이 아니었으나(10억미만) 사업추진 중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을 경우
 - 신규 심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심사로 보아야 하는지
 -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닌지
- ※ 당초예산에 8억 4천만의 예산을 편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중 감정 평가액이 증가하여 보상비가 늘어나 총사업비가 10억6천만원으로 증가됨(본 공사는 시작되지 않음)

【 회 신 】

○ 질의 1)에 대하여는 착공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질의 2)에 대하여는 신규심사로 보는것이 타당

Ⅲ. 지방채

1. 기존 부채의 차환 등 승인없이 지방채발행이 가능여부

Ⅰ 질 의 Ⅰ

- 지방채발행시 기존 부채의 차환(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등과 같이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없이도 발행이 가능한지

Ⅰ 회 신 Ⅰ

○ 지방채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이율을 낮추는 경우, 지방채 상환 연환을 단축하거나 또는 이율을 높이지 않고 차환 및 조기상환하는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가능함

2. 지방채발행 관련 규정 유권해석 질의

Ⅰ 질 의 Ⅰ

-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제240호)에서는 지방채발행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있어,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사항을 행안부 예규로 다르게 구속한 이유와 이를 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Ⅰ 회 신 Ⅰ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의사항의 경우는 예규로서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속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 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성(지방채발행 의결, 예산의결) 등을 고려하고 지방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결을 지방채발행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또한 예산의결로 갈음하지 않고 별도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채발행 가능함

IV. 예산의 편성

1.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수입의 세입예산 편성

Ⅰ 질 의 Ⅰ

- 자치단체 연구부서에서 타 기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수입을 예산에 반영 지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여 지출 하는지

Ⅰ 회 신 Ⅰ

-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연구용역에서 발생한 수입의 경우에도 반드시 예산에 반영·지출하여야 함
- 참고로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에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세계현금의 전용

Ⅰ 질 의 Ⅰ

-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일반회계로의 일시차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일시차입금) 및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에 따라 일반회계로 일시전출 및 세계잉여금의 전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향후 세입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금고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내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근거인 주차장법과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자금 차출관련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자금전용은 가능하다 판단됨
-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차장법 제22조에서 정한 주차요금 수입에 대하여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한 하여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질 의 ||

-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대하여

|| 회 신 ||

-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는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3항을 준용한다.”로 정하고 있음

4. 삭감예산의 예비비 증액시 자치단체장의 동의

■ 질 의 ■

- 삭감예산의 예비비 증액 시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지

■ 회 신 ■

- 예비비는 집행목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예산으로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편성된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 자치단체장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임

5.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확정통보의 성립전 예산집행

■ 질 의 ■

- 극심한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중앙에서 지원계획에 의거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확정통보 공문으로 사업비가 교부된 것으로 보고 추경성립전 사용이 가능한지
- 아니면 교부결정 통지서가 시달되어야 추경성립전 사용이 가능한 지

■ 회 신 ■

- 예산성립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뭄대책지원계획의 성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동 계획이 교부결정의 대체적인 방법으로 통보된 경우라면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동 계획이 단지 교부결정 이전에 절차상 이를 알려주는 정도의 성격이라면 명확한 교부결정통지를 받아 성립전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공기관 지원사업비의 성립전 예산

Ⅰ 질 의 Ⅰ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 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또는 국토관리청에서 시설 이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기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이 가능한지

Ⅰ 회 신 Ⅰ

- 관계 법령에 성립전 예산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용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추경전 예산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수자원공사 등 공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집행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7.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의 예산편성

Ⅰ 질 의 Ⅰ

- 채무부담행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우 차기 추경 시 첨부서류로 계속 제출하여야 하는지,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의 예산편성 과목은

Ⅰ 회 신 Ⅰ

- 채무부담행위 내용이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승인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 채무부담행위 예산의 편성과목은 채무부담행위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V.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수당

Ⅰ 질 의 Ⅰ

- 법령 조례상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경우 참석자에게 운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Ⅰ 회 신 Ⅰ

-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를 참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와 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위원회 활동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기간제근로자보수 과목에서 용역으로 집행가능 여부

Ⅰ 질 의 Ⅰ

- 기간제근로자보수 과목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전문업체 용역으로 집행 가능한 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무의 성격, 내용, 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고용하는 것으로,
- 인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함

3.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 지급조례

질 의

-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에 대해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시 「보사부 훈령」 및 「공중 보건 의사관리지침」만으로는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군 보건소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또는 연구비 지급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회 신

- 공무원에 대한 보수(봉급+수당)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지급조례를 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보건복지부 공중보건 의사관리지침에 의거 공중보건 의사에게 기본보수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배치기관별로 수당, 연구비,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남
- 다만,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 의사에게 별도 연구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도 조례의 제정없이 연구개발비 비목에 편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연구계획서와 연구실적(논문 등)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4.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제도 신설

질 의

- 도 직영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신설하여 지급 가능한지

회 신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내용에 의하면, 수당 등의 신설·인상 요구기준의 기본방향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을 유지하고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개별수당 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 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 수당 등 신설 요구기준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과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과 내용 및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 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공무원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과거 통·폐합된 수당 등을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제도”의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5. 경조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Ⅰ 질 의 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직원 경조사비 집행이 가능한 지
- 가능하다면 소속기관 직원이 아닌 타기관(예를 들면 사업소장이 읍면직원에게) 직원에게 집행이 가능한지

Ⅰ 회 신 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압비로 사용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경비이며, 동 경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은 지방예산이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이므로 무엇보다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됨 (사적집행금지 원칙)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동경비로 공적인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경비의 집행 대상이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사료되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의 집행결과 집행내용은 회계증빙서류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집행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집행자의 책임임

- 동 경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와 비교하여 볼 때 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한 목적의 경비라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다는 정원가산금을 집행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다만,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 부단체장, 국장 등의 직책 수행을 위한 포괄적 경비이며, 해당직위를 대상으로 연간 기준액을 정하고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액을 아낄 목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인 정원가산금에서 개인직위의 명의로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음

6.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대상

Ⅰ 질 의 Ⅰ

-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종전 법무팀(계)이 기획팀(계)으로 흡수 통합되어 현재는 법무업무를 기획담당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음
- 그러나 종전 법무팀 부서 직원에게 지급하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지급범위가 “법무팀” 또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무팀(법무계)”이 없고 “기획팀(기획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범위가 기획팀에 소속된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만 지급이 가능한 지, 아니면 기획팀장(계장)을 포함하여 지급 가능한 지

Ⅰ 회 신 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법무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해당 특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위와 같이 연도 중 기구·직제 변경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며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7. 전담부서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Ⅰ 질 의 Ⅰ

- ○○ 구청의 경우 지방세는 시세과, 구세과에서 세무직공무원이, 세외수입업무는 교통행정과(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재무과(국공유재산 변상금)등 각 개별부서에서 행정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음

질의1) 교통행정과, 재무과 등에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실과 단위가 아닌 “담당” 단위)하는 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질의2) 세무직공무원이 교통행정과, 재무과 등에 근무하면서 세외수입 업무의 부과·징수 업무를 직접 담당할 경우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질의3) 질의2에서 세무직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면, 현 근무부서는 구세과, 시세과 등 세무와 직접연관되는 부서에 두면서, 세외수입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재무과 등으로 “동원근무 명령”을 내어 세외 수입 업무를 세무직공무원이 담당할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Ⅰ 회 신 Ⅰ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며 또한 파견 등으로 지방세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에게도 지급이 불가함

8. 파견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원

Ⅰ 질 의 Ⅰ

-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제외)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데 중앙기관 및 타기관에 파견된 경우에 대민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지

|| 회신 ||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이하, 시군구 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파견 등으로 당해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할 수 없으며,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앙기관이나 타 기관 파견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9.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집행

|| 질 의 ||

- 시의회 의장단이 회기 또는 비회기 기간중 각종행사 참석,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의장단활동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차량유류대 집행이 가능한지
- 의정활동 차원의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해 의장단활동비에서 도서구입이 가능한지

|| 회 신 ||

- 질의 공통적인 사항은 의장단활동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로서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공적인 경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집행결과에 대하여는 집행자가 회계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함. 따라서 경비를 공적으로 집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의장단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음
- 이러한 의장단활동비의 성격으로 볼때 차량유류대로의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용도의 공·개인 구분이 어려워 공적인 경비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의장단활동비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의회전체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통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비치·활용할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나 개인이 활용·소장하는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10.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추가지급

Ⅰ 질 의 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외에 조례에 의거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Ⅰ 회 신 Ⅰ

- 통리반장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통리장의 경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기본수당(월200천 원), 상여금(연200%), 회의참석수당(월2회), 반장은 연 50천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도록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통리반장활동보상금(301-05)을 기준경비 이상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다만, 통리반장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조례에 지급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적정한 과목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Ⅵ. 예산의 변경 관리

1.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비의 사고이월 여부

Ⅰ 질 의 Ⅰ

-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코자 분할 납부로 2002년부터 매년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있음. 2006년 완성예정인 부지공사가 토지공사측의 공사 완공기일 연장으로 잔금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데 다시 공사 완공일을 2008년도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음. 이 경우 지출원인행위 이전에 공사연장 통보를 받다보니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었음. 잔금납부 시점이 2008년으로 연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위하여 2007년도에 지출품의를 해야 하는지, 계속비사업은 아니나 2002년 당시 토지매입 분할계약서등을 지출원인행위로 보아 사고이월 할 수 있는지

|| 회신 ||

- 세출예산중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고이월로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인 바
- 2007년 예산을 2002년 계약서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비사업이면 가능하다, 당초 사업이 계속비사업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사고이월을 할 수 없음

2.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된 예산 사업명변경 여부

|| 질의 ||

- 계속비사업으로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현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비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다른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한지

|| 회신 ||

-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므로 사업비의 변경, 부기 변경 등은 불가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불용처리, 신규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3. 다른 부서의 예산사용(이용)

|| 질의 ||

- 다른 부서의 예산을 업무협의를 통해 집행해도 되는지
예) A국 A-1과에서 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B국 B-1과에 있는 용역비를 사용

【 회 신 】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용 절차(의회 승인)를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함

4. 예산의 전용 절차와 방법

【 질 의 】

- 예산의 전용 절차와 방법은

【 회 신 】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전용요구 : 사업부서는 통계목단위로 세출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 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전용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전용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전용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출예산배정 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 관련부서에 통보

5. 예산의 이체 단위

【 질 의 】

- 예산 이체의 단위는 무엇인지

회 신

- 예산 이체는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필요시 통계목 단위의 금액 이체 가능
 - ※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로 보았을때 예산 이체는 정책사업 단위로 이체하는 것이 타당하나, 불가피한 경우 최소 세부사업 단위로 이체. 성과지향의 사업예산제도 하에서는 조직의 변경에 따른 성과계획, 목표의 변경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책임까지도 이체되어야 함
- 정책사업은 정책·단위·세부사업 단위로 이체하며, 이체 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함
-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통계목 단위로 금액이체 가능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편성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및 통계목 금액을 배분하여 이체가 가능
 - 행정운영경비라 하더라도 하위의 단위·세부사업이 사업단위로 이체될 수 있으며, 사업단위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통계목 단위 및 통계목 금액을 배분하여 이체가 가능
 - 재무활동의 경우는 사업단위로 이체 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도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구조화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VII. 기타 지방재정제도

1. 기금설치에 관하여

질 의

- 기존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농어업소득사업 자금지원을 ‘농어업소득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던 중
 - 2008. 1. 1부터 지방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행안부장관과 협의후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금설치의 경우 행안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야 하는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며
 -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기금을 신설코자 하는 경우는 행안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이 아님

2. 법원 판결로 패소한 소송비용 채권의 소멸시효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하여 소송비용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

【 회 신 】

- “채권”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에 의해 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소송비용”은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시효는 동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 따라서 위의 경우는 지방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5년에 해당되나, 해당 채권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으로 법원의 판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금고 약정시 출연금의 성격 및 사용용도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시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출연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회신

-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금고지정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의 반대급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음(법제처 유권해석도 동일, 2002.5.31)
- “출연금 등의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동 기준 “〈별첨〉II.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중 5. 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실적”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출연금의 사용용도는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함

VIII. 지방예산 용어 해설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민간금융시장에서 주로 운용하고 있는 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SOC 등 공공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말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93.12) 및 동법시행령('94.4)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지하철 등 지역SOC사업, 국가정책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채로 인수하여 지원받고 있음



긴축재정(緊縮財政)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규모의 확대율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는 재정방침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줄이는 재정을 말함. 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사업의 연기나 중단, 급여폭의 인하 등을 통해 실시함

긴축재정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 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삭감함. 따라서, 긴축재정은 호황에서는 경기에 대한 디플레적 성격을 띠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을 띠게 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민간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위험이 따름. 긴축재정과 반대의 개념인 적극재정은 불황시에 경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증대시키는 경우를 말함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즉,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이에 대한 국회심의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재정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임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 zero-based budgeting)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존속·축소·확대여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적용되던 영기준 예산제가 1979년 연방정부에서 도입·적용되었고, 우리나라는 1983년 예산편성에서부터 부분적인 도입을 해오고 있음(예산편성을 통한 감축)

영기준예산은 본질적으로 “Bottom up”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부에 의해서 지침이 제시되거나 예산총액이 제약요인으로서 제시될 경우에는 “Top down”이 되기 때문임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특정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되, 당해연도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는 예산제도임

<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외국의 입법에 >

준예산과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잠정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통상 4~5개월분의 예산을 확정함)와 가예산제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음

- 假예산 : 국가가 1개월내의 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 예산이 의결되어야 함
(과거 한국, 프랑스)
- 暫定예산 : 일정금액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의회의결로 허용(영국, 일본)
- 踏襲예산 :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의 답습을 허용(미국)
- 準예산 : 준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음(우리나라, 독일) ☺

